

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박호근, 김경자(양천), 김영한, 김혜련, 문형주,
우미경, 이순자, 이신혜, 이윤희, 장우윤, 조규영,
한명희 의원(12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2193 호

다. 발의일자 : 2017. 10. 30.

라. 회부일자 : 2017. 11. 1.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설공단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(안 제13조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서울시설공단 이사회 구성에 관한 조문인 현행 조례 제13조제2항 중 단서로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사회의 양성평등을 기하려는 취지로 이해됨.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(안 제13조제2항)

현행	개정안
제22조(구성) ① (생략)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	제2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다만,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③ ~ ⑦ (생략)	③ ~ ⑦ (생략)

- 현행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¹⁾는 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과 같은 합의제 기관에 대해 위원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면서 다만, 여성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1)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그러나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가 이처럼 양성평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주체는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’이기 때문에, 서울시 출자기관이긴 하나 「지방공기업법」에 근거한 법인격인 서울시설공단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라 보기에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임.
- 다만, 이사회도 합의제 기관의 범주에 있다 할 것이고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의 제정 취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,
- 노력의무로 순화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회 구성에 적용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적극 동감할만하고 양성평등 실현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음.
- 참고로, 서울시설공단 이사회는 정관²⁾에 따라 이사장 1명, 이사 11명이 선임되어 총 12명 중 남성은 10명, 여성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임([표] 참조).

[표] 서울시설공단 이사회 성별분포 현황

구 분	이사회 구성 현황(2017.11. 기준)		
	총 원	남성(비율)	여성(비율)
인원(명)	12	10 (83%)	2 (17%)

2) 제10조(임원)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9인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1인의 감사를 둔다. 다만, 비상임이사 중 2인 이내를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이사로 둔다.

② (생략)

제23조(설치 및 구성)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~ ④ (생략)